

## 200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안내

### 중소기업청 올해 총 2조 8천억원 규모, 업체당 45억원 한도 지원

중소기업청은 '2006년도 정책자금 용자사업 지원계획'을 확정·공고하고, 집행자금에 대한 용자신청 접수를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15개)를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2조8천억원 용자규모의 2006년 정책자금 용자사업은 정책자금 지원 조건에 많은 변화가 있다. 과거 자금별로 일률적인 금리를 적용하던 것을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금리가 적용되고, 우량기업은 시중 금융을 활용토록 유도하여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사업별 용자대상에 있어 성장단계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별 잔액기준 지원한도를 종래 5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축소하되, 비수도권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억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각 자금에 대한 설명자료 및 신청방법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http://www.sbc.or.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편집자 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조 8천억원 용자규모의 '2006년 정책자금 용자사업'을 발표했다. 올해에는 정책자금 지원 조건에 많은 변화가 있어 중소기업에서는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올해 달라지는 정책자금 지원조건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첫째, 기술혁신 분야와 경영혁신 분야의 혁신형 기업 기준을 재정비하여 혁신형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부여, 특례 지원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한다.

둘째, 과거 자금별로 일률적인 금리를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정책자금 운용에 시장원리를 일부 도입하여 개별기업의 리스크를 반영한 금리를 책정함으로써 자금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용자지원을 받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평가를 거쳐 책정된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4.0%(B+ 이상)~최고 5.2%(D 이하)의 금리를 적

용받게 된다. 이 경우 정책자금 전체의 가중평균금리는 4.5%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담보대출 평균금리인 5.7%보다 1.2%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이번 마련된 금리구조는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용자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전체의 금리부담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개별기업의 금리부담은 차등화되지만 전체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셋째, 우량기업은 시중 금융을 활용토록 유도하고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과거에는 중진공 신용평가 A 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그 외에도 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회사를 발행한 기업, 신행사의 BBB 등급 이상인 기업이 추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량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취지는, 상대적으로 금융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사업별 용자대상이 일부 조정됐

다. 일부 고소득 업종(법무, 회계서비스업, 의료보건업 등)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취지에 맞지 않아 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벤처창업자금의 경우 과거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것을 업력 5년 미만으로 조정하여 성장단계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다섯째, 더 많은 중소기업에게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당 용자지원 한도를 축소 조정하였다. 기업별 잔액 기준 지원한도를 종래 5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축소하되, 비수도권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억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출금융 자금의 경우 20억원이던 지원한도를 10억원으로 축소하여 소수의 기업이 자금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개선하였다.

여섯째, 월단위로 지원금액을 배분하여 신청을 접수하도록 하였다. 이는 과거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거나 또는 기간 구분없이 신청받아 용자지원을 한 결과, 상반기에 대부분의



자금이 소진되어 하반기의 중소기업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하반기에 설비투자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예년과 달리 연초에 자금신청을 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일곱째,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환방식을 다양화하였다. 과거에는 월별·분기별 상환방식만 있었으나, 올해부터 체증식 상환방식(상환기간중 후반기에 많은 금액을 상환), 매출액 변동식 상환방식(계절별로 상환금액을 달리하는 방식) 등을 추가 도입하여 세가지 상환방식중 적합한 방식을 업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는 정책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자금 신청 기업에 대한 심사시 기업의 윤리성 평가를 강화하고, 지원기업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지원자금의 용도의 유용여부를 실시하도록 하여 정책자금을 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조기회수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각 자금을 대한 설명자료 및 신청방법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금 신청 및 상담은 기업 소재지의 중진공 지역본부로 하면 된다.(지역본부 연락처 참조)

### 구조개선자금

**\* 사업소개** : 중소기업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중소기업이 미래지향적 기업구조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21세기 산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사업

###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용자제의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5년 이상의 기업(단,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업체 및 용자제의 대상 업종 업체 중 용자지원 대상 업종으로 사업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업력 5년 미만 기업이 창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홈페이지 참고)과 일반형 중소기업으로 구분 지원(혁신형 중소기업은 우대)
- ※ 지식기반서비스업종(홈페이지 참고)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용자 지원

### \* 용자범위

#### 가. 시설자금

- 생산설비를 구입·개체하거나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 및 설비구입·개체 자금
-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입 및 건립에 소요되는 자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구입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필요한 사업장확보 등 시설자금(단, 사업장확보자금은 중소기업간 구조조정 및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인수·합병 및 경공매로만 한정 지원)
- 산업발전법에 의거 등록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중소기업 인수자금

#### 나. 운전자금

-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 위탁개발비, 시험평가비, 설계비 등 연구개발비용, 위탁생산비용, 시장진입비용
- ※ 혁신형 중소기업에 한함

#### 다.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타기업 개발기술 도입 및 제조·판매권리 양수비용
- 법인전환비용 등

### \* 용자조건

- 가. **용자금리(변동금리)** : 연 4.4%(기준금리)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나.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단, 중진공 신용대출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다. **용자한도** : 업체당 연간 총 30억원 이내(운전자금 5억원 포함)

### \* 대출방법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출
- 시설자금을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받고자 할 경우 종합진단을 통한 구조고도화 실천계획 수립이 필요

### \* 신청서류

- 구조개선 용자지원 신청서 1부(홈페이지 참조, 신청서양식 참조)
- 최근 3년간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금융거래확인서 1부

### 지식기반 서비스 육성

**\* 사업소개** : 지식 정보화 시대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육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동시에 안정적인 내수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지식기반서비스업(운전자금 용자지원시 전업률30% 이상, 단 S/W업종은 예외)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홈페이지 참조)

### \* 용자범위

- 가. **시설자금**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자금 및 사업장확보자금
- 나. **운전자금**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 \* 용자조건

- 가. **용자금리(변동금리)** : 연 4.4%(기준금리)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나.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단, 중진공 신용대출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다. **용자한도** : 연간 총 10억원 이내(운전자금 5억원 포함)

### \* 대출방법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출

### \* 신청서류

- 지식기반서비스업 용자지원 신청서 1부(홈페이지 참조, 신청서양식 참조)
- 최근 3년간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금융거래확인서 1부

## 특별경영안정

**\* 사업소개** : 사업성과 기술력은 우수하나 재해, 원부자재 수급에로,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하는 사업

###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융자제의 대상 업종(우측 참고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의 중소기업(단,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업체 및 융자제의 대상 업종 업체 중 융자지원 대상 업종으로 사업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다음 각 항목 중 1의 사유가 발생한 자 :

### 1. 회생특례자금

- ①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 3%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② 거래 금융기관(기업) 구조조정, 장기노사분규 등 기업경영에로요인이 발생한 경우
- ③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④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다음 각 세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발전법에 의한 구조조정전문회사(구조조정조합 포함) 또는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가 상기 사유 발생후 투자가 일어난 경우
  - 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 등이 회생지원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출자 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직접대출기업중 특수관리기업으로 지정하였거나 출자전환한 경우
  - 대주주감자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경우

### 2. 원부자재구입자금

- ① 원부자재 수급에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기업

### 3. 재해복구자금 : 재해중소기업

### \* 융자범위

- 가. 회생특례자금** :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나. 재해복구자금** :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다. 원부자재구입자금** : 원부자재 구입을 위한 비용

### \* 융자조건

#### 가. 융자금리(변동금리)

- 원부자재구입자금 : 연 4.4% (기준금리)
-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회생특례자금 : 연 7.9%
- 재해복구자금 : 연 4.4%(재해복구자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나.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다. 융자 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원부자재구입자금은 5억원 이내)

### \* 대출방법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출
- 회생특례자금을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받고자 할 경우 종합진단을 통한 구조고도화 실천계획 수립이 필요

### \* 신청서류

- 회생특례자금 / 재해중소기업자금 / 원부자재구입 융자지원 신청서 1부(소정양식, 홈페이지 신청서양식 참조)
- 최근 3년간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금융거래확인서 1부

## 중소/벤처 창업

**\* 사업소개** :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발굴, 자금을 융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초기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

### \* 신청대상

- 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융자제의 대상 업종(우측 참고자료 참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단, 융자제의 대상 업종 업체 중 융자지원 대상 업종으로 사업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다만,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중소기업)

#### 나. 창업을 준비중인 자

- \* 지식기반서비스업종(우측 참고자료 참조)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융자 지원

### \* 융자범위

- 가. 시설자금**  
 -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 공공 s/w, 중공시설

-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사업장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금
-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나. 운전자금

- 연구개발비용,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일상경비

### \* 융자조건

#### 가. 융자금리(변동금리) : 연 4.4%(기준금리)

-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나. 융자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다.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 단, 중진공 신용대출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 단, 중진공 신용대출시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 대출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출
- 시설자금을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받고자 할 경우 종합진단을 통한 구조고도화 실천계획 수립이 필요

### \* 신청서류

-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신청서 1부(소정양식, 홈페이지 신청서양식 참조)
- 최근 3년간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금융거래확인서 1부

## 협동화

**\* 사업소개** :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협업화를 통한 경영개선으로 공동기술개발 및 원자재공동구매 등을 추진함으로써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 참가업체 자격

- 가. 주된 영위업종이 지원제외업종(홈페이지 참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정비율의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인 경우에는 영위업종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지역혁신 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인 경우 우대 (시범단지: 창원, 구미, 울산, 반월, 시화, 광주, 원주, 군산)
-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는 참가업체수의 1/2 범위 이내로 제한(단, 벤처기업 및 창업교육센터 졸업기업은 예외)

**\* 추진요건** : 협동화사업의 추진의사가 있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규합해야 하고, 신망있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주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협동화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사업종류**

- 가. **집단지** :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제조공장집단지, 시험연구실집단지, 사무실집단지, 중소기업집단지 등)
- 나. **공동화** : 중소기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창고 또는 집배송센터,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공동제품전시판매장, 공동물류창고, 공동폐수처리시설, 공동시험검사시설 등)
- 다. **협업화** : 중소기업자들이 경영개선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공동상표개발, 판매 활동, 원자재구매, 품질관리, 정보수집, 해외시장진출, 수출협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기업간 컨소시엄, 공동제품개발, 공동상표개발, 원자재공동구매, 공동전자상거래 시스템개발 등)
- 라. **해외협동화** :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의 일정한 지역에 사업장 또는 창고, 물류센터, 제품전시판매장, 사무실 등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우선지원(투자정보알선 및 자금지원 등)

**\* 융자범위**

- 가. **시설자금** : 금리 4.4%, 대출기간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포함)
  - 지원비율
    - ①공동시설 : 소요자금의 100%이내
    - ②개별시설 : 토지-소요자금의 80% 이내 (수도권: 60% 이내)/ 건물-소요자금의 80% 이내
  - 기계설비-소요자금의 100% 이내
- 나. **협업화자금** : 금리 4.4%,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100%이내
- 다. **운전자금** : 금리 4.4%,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지원비율 : 1회전 소요자금의 100% 이내
-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세제 지원**

- 가. **취득세, 등록세** :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 협동화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가능
  - 취득한 부동산을 2년내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면제가능
- 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 ·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 과세기준일 현재 협동화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가능

**개발/특허기술 사업화**

**\* 사업소개** :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술력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사업

**\* 신청대상**

- 가.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청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관정을 받은 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기술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기술 정보센터(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받은 특허출원기술 포함)
  - 대학(국외대학포함),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이 양도되고 이전받은 결과물이 제품화가 가능한 기술
  -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업체 보유기술
  -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 또는 중소기업청 기술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
  - \* 신청기술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은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에 있어야 함

**\* 융자범위**

- 개발 및 특허기술을 활용한 제품양산에 필요한 생산설비 구입비등 시설자금
- 개발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장개척비, 원부자재 구입비 등 운전자금

**\* 융자조건**

- 융자금리(변동금리) : 연 4.4%(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은 3억원 이내)
- 담보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평가를 통한 신용대출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서 담보

**\* 대출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 신청서류**

-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지원자금 신청서 1부(소정양식, 우측 신청서양식 참조)
- 최근 3년간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금융거래확인서 1부

**수출금융**

**\* 사업소개** : 수출잠여 또는 수출확대를 희망하나 수출실적과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금융을 융자하여 수출저변 확충과 내수기업의 수출기회확대 촉진을 도모하려는 사업

**\* 신청대상**

- 가.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려는 중소기업(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홈페이지 참고자료 참조)**
  -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융자범위**

-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최대 1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서(L/C, D/A, D/P, T/T, LOCAL L/C, M/T, 구매확인서, O/A)에 따른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비용 대출(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실적기준 포괄금융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이내로 5억원 한도로 대출
- \*실적기준 포괄금융 이용업체는 기업당 한도 내에서 신용장기준 포괄금융과 병행대출 가능(최대 10억원 이내)
- \*국내기업이 외국(국내기업의 해외현지 법인 포함)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의 경우에는 국산원자재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한정하여 지원

**\* 융자조건**

- 가. **융자금리(변동금리)** : 연 4.4%(기준금리, 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에 연동)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 정책자금정보

금리 적용

## 나.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실적기준 포괄금융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한 어음 매입 시 정산 (최장 180일 이내)

## 다. 융자한도 : 업체당 10억원

-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 수출 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최대 1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실적기준 포괄금융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로 5억원 한도
- \*실적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장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 대출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 중진공 기업신용평가를 통한 순수신용 대출 또는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심사를 통한 수출신용보증서부 대출
- 소액 수출금융 이용기업에 대하여 수출신용 수탁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보증심사진행

## \* 신청서류

- 수출금융지원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1부 (소정양식, 우측 신청서양식 참조)
- 최근 3년간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금융거래확인서 1부

## 대·중소기업 협력

## \* 사업소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발전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여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

## \* 융자규모 : 1,090억원

## \* 신청대상

- 가.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추진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제2조에 해당)  
(중소기업기본법상 제2조에 해당)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전업률 30% 이상)
  - 대상사업 :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품질향상, 마케팅 등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전부

## \* 융자범위

- 가. 시설자금  
(건물)

- 공장(사무실, 창고 등 포함)구입, 신축, 증축, 개축, 임차
- 경·공매, 수의계약 낙찰 공장건물
- 기업간 합병계약에 의한 인수대상 건물

## (기계·장치)

- 생산성 향상, 시험·검사·분석, 정보화, 기술개발 추진 관련 기계·장치
- 정보화구축 관련 s/w(용역개발 s/w 포함)
- 기존시설 성능개선 등을 위한 추가설비(컨트롤러, 자동제어시스템)
- 환경오염 방지시설
- 금형 및 차공구
- 이송설비(크레인), 차량, 운반구
- 직무기피해소를 위한 시설
-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재해예방시설·장비
-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설비, 대체에너지 관련 설비
- 기타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설비

## 나. 운전자금

- 시설 도입시 소요되는 시운전자금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 개발기술 또는 제조, 판매권리를 양수 받는 비용
- 법인전환에 따른 제반비용
- 국내외 판로개척비용

## \* 융자조건

- 가. 융자금리 : 연 4.4%~5.0%(변동가능, 신용지원은 0.5% 가산)

## 나. 대출기간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 신용대출의 경우 시설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 운전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 다. 융자한도 : 업체당 50억원

## \* 대출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 대출 및 대리 대출 : 기성고 등을 확인하여 일시 또는 단계별 지원

## \* 신청서류

신청서 1부(소정양식), 최근 3년간 결산년도 재무제표

## \* 중소기업청

지방중기청	전 화	지방중기청	전 화
서울	(02)509-7018/9	경기	(031)201-6800/2
충북	(043)230-5300	부산·울산	(051)601-5111
대전·충남	(042)865-6100	전북	(063)210-6400
대구·경북	(053)626-2601	인천	(032)818-8321
경남	(055)268-2511	광주·전남	(062)360-9109
강원	(033)260-1600	제주	(064)723-2101

##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중기청	전 화	지방중기청	전 화
서울	(02)769-6602~8	경기·북부	(031)920-6700
부산	(051)630-7400	충북	(043)230-6800
울산	(052)277-3281	전북	(063)213-2130
대구·경북	(053)601-5300	경남	(055)212-1350
인천	(032)450-0500	강원	(033)256-9611/3
광주·전남	(062)600-3000	강원·영동	(033)646-9967/8
대전·충남	(042)866-0114	제주	(064)751-2055/7
경기	(031)259-7900		

##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지방중기청	전 화	지방중기청	전 화
서울	(02)789-9287/789-9297	광주	(062)361-0630
서울(강남)	(02)567-6800	서울(강동)	(02)3401-4025
서울(중부)	(02)754-3591	대전	(042)483-2993/6
부산	(051)466-4115	경기	(031)215-1560
대구	(053)424-6970	인천	(032)438-9080

## \* 지역신용보증재단

지방중기청	전 화	지방중기청	전 화
서울	(02)563-0673	경기(수원)	(031)259-7700
부산	(051)831-1183	강원(춘천)	(033)251-1353
대구	(053)554-5300	경남(창원)	(055)263-2262/4
인천	(032)260-1500/3	경북(구미)	(054)474-7100
광주	(062)950-0011	전남(순천)	(061)743-0365
대전	(042)864-1701/6	충남(아산)	(041)541-9833
울산	(052)289-2300	충북(청주)	(043)236-2691
제주	(064)758-5740		

## \* 인터넷 이용 안내

- 중소기업청 : [www.smba.go.kr](http://www.smba.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 [www.sbc.or.kr](http://www.sbc.or.kr)
- 기술신용보증기금 : [www.kibo.co.kr](http://www.kibo.co.kr)
- 정책자금안내시스템 : [www.finainfo.go.kr](http://www.finainfo.go.kr)
- 소상공인지원센터 : [www.sbdc.or.kr](http://www.sbdc.or.kr)